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
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의원 : 김성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2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5일

3. 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·시행 으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종전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오던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
-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규정취지에 맞게 조례명 변경(안 제명)
 - (현행)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
 - (개정)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조례

-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·기능(안 제2조)
- 센터 운영의 위탁 근거,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(안 제6조)
- 센터의 위탁·운영에 따른 지도·감독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는 2016년부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 위해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시행해 왔음.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2023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·운영되고 있으며, 조례 개정을 통해 종전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오던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정비가 필요함.
-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목적과 기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

- 본 개정안은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으며,
- 제1조(목적), 제2조(센터의 설치 및 기능), 제3조(센터 운영의 위탁), 제4조(운영규정), 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, 제6조(비용의 지원), 제7조(감독)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센터의 운영의 위탁근거,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안 제6조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며, 제7조는 위탁·운영에 따른 지도·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다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고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를 거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. 끝.